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701
----------	-----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42건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법」 제9조 → 제4조 등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간 조문의 이관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16. 11. 30. 시행)으로 이관되는 등의 변동사항 반영
- ▶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 「지방회계법」 제18조 등

다.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조문 중 오기사항 등 정비

- 「노인복지법」 제39조19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공사품질관리 지침」 별표 5”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건설사업

관리 업무지침서」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을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2조제4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노인복지법」 제39조19”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 제15호”를 “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

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아목”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사목2)”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의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를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 냉매”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

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 16호 중 “특별법 제2조제3호”를 “특별법 제7조제2호”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관리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0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 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법 제17조”를 “법 제29조”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1항제6호”를 “영 제24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법 제4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을 “「식생활교육지원법」”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법 시행령 제2조”를 “법 시행령 제2조의2”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7조제3항”을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아동복지법」 제27조”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법 제94조제4항제12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2호”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94조제5항제5호”를 “법 제94조제4항제5호”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을 “법”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을 “「지방회
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을 각각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지방회계법」 제39조”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과 같은 법 제36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도법시행령」”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등 42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비용을 수반하지 의안으로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2133-6692)